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공사(건축)]

- 점검일시 : 2019.03.22 (금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이태행

|  |  |
|--|--|
| <p>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</p> <p>- 옥탑 덕트 작업 구간 최상부 슬리브에 개구부 덮개가 미설치 되어 있어, 천막을 걷는 작업중 추락위험이 있으니, 유동이 없고 개구부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구조로 덮개 설치 요망<br/>        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</p>  |    |
| <p>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</p> <p>- 계단실에 있는 분전함의 메인 전선은 근로자 이동시 전도등의 위험이 있으므로, 상부에 매달거나, 바닥에 밀착하여 관리 요망<br/>        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</p>   |   |
| <p>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</p> <p>- 6층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기 위해 설치된 가설계단은 벽돌위에 설치되어 있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계단의 유동이 생길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니 위치를 조정하여 재설치 요망<br/>         - 이동시 장애물에 의한 전도 위험이 없도록 설치 요망<br/>        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</p> |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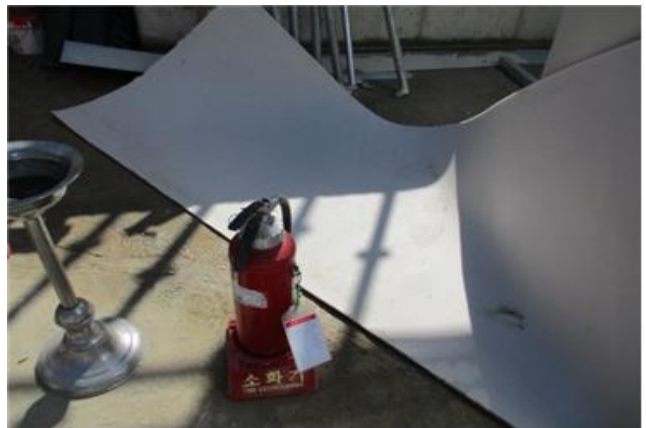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계단실 이동통로에 거꾸집 고정용 타이핀이 남아있어 근로자 이동시 찢림/베임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제거 요망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기존 건물에 배치되어 있던 가압식 소화기를 현장에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음, 노후화 된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없어 내부 압력 등을 확인 할 수 없고 폭발등의 위험이 있으니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 요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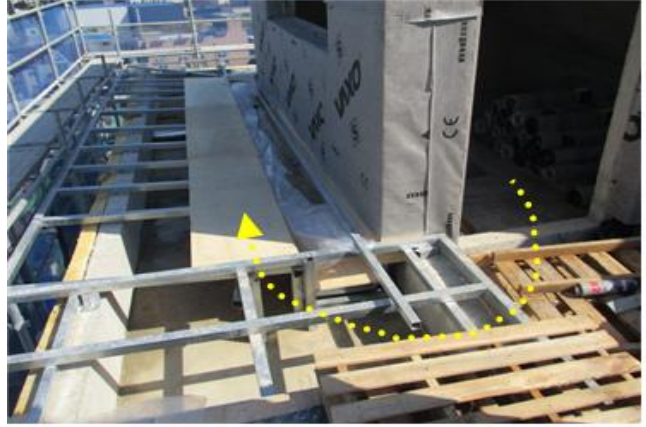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옥탑에 자재들이 적치되어 있어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, 자재를 정리 및 발판등을 설치하여 항상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 요망  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 의설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부계단실 4~5층에 설치된 가설비계는 작업이 끝났고 현재 사용 하지 않는 상태임, 즉시 철거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 요망  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부계단실 6층 계단참에 설치되어 있는 창호 개구부를 통하여 자재등이 건물 외부로 낙하할 위험이 있으니, 발끝막이판 등을 설치 요망  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5층에 설치 된 안전교육장은 현재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임. 안전교육장 청소 및 위치 이동등 관리 요망

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작업장 곳곳에 있는 의자는 작업발판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출 요망

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자재야적장은 민간인이 접근을 하지 않도록 구획정리를 확실하게하고 소화기를 배치하여 관리 요망

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계단실 5~6층 계단실 증축구간 콘크리트벽면에 이물질이 있으니 제거 및 품질관리 요망

